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

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)

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)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> 2025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

│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,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

□ 사업근거
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0
 - 제11조(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)
 - 제13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)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- 제6조(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)
 - 제8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 기준 등)
 - 제9조(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지정 절차 등)

¹⁾ 이하, "노인일자리법" 이라고 함

□ 지원규모

○ 사업별 지워내용

구분		지원내용	보조금 지원 규모	신규 고용 목표인원
고령자 친화기업	노인 채용기업	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	개소 당 최대 3억 원	최소 5명
	노인친화 기업·기관	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(개선)을 위한 비용 지원 등	개소 당 최대 2억 원	이상

※ "노인"은 "60세 이상인 자"를 기준으로 함

○ 세부 지원사항

- (노인 채용기업)
 - ·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
- (노인친화기업·기관)
 - ·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(개선)을 위한 비용 지원
- (공통 지워사항)
 - ·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, 편의 시설 설치·구입 등
 - ·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(인건비, 사업비 등)
 - · 기술 지원, 상품 사업화,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
 - · 인사·노무, 세무·회계,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
 - ·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·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
 -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
 - ·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(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: 1.25점) 등

□ 산출기준

구분				산출기준	신규 고용 목표인원
	노인	최대	지정연도	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 최대 2억원 지원	최소
고령자	채용기업	3억원	1차 연도 · 2차 연도	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×300만원	5명 이상
친화기업	노인친화	최대	지정연도	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비용 등 최대 1억원 지원	최소
	기업·기관	기업·기관 2억원 1차 연	1차 연도 · 2차 연도	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×300만원	5명 이상

○ 교부방식

- (분할교부) 3년간 교부(지정연도, 1차·2차 연도)
- (교부시점)
 - · 지정연도는 대응투자금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(보조금 지원 총액 (분할교부 총액)으로 가입) 제출 후 보조금 교부
 - · 1차·2차 연도는 이행계약서 상 고용 목표인원(60세 이상 노인 신규 고용 1명×300만원)에 따라 교부
 - ※ 이행계약서의 신규 고용 목표인원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, 고용 목표인원의 50% 미만 달성 시 계약 해지됨에 유의
 - ※ 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 의무는 지정연도의 다음해부터 발생

< 고용 인원 산정 기준 >

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

Ⅱ. 추진일정

구 분	주요 내용	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접수 및 선정 접수 및 선정
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	보건복지부(한국노인인력개발원)사업공고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	'25. 2. 14.(금) '25. 4. 1.(화) ~ 3. 31.(월) ~ 6. 30.(월)
~		
예비 심사	• 적격 심사 등 진행 * (내용) 참여자격 및 기업 안정성 등 전반 검토	'25. 2. 14.(금) '25. 4. 1.(화) ~ 3. 31.(월) ~ 6. 30.(월)
~		
1차 심사	• 공모 1차 심사 진행 * (대상) 공모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심사를 통해 적격여부가 검증된 기업 * (내용) 기업 현장실사	'25. 4. 7.(월) '25. 7. 7.(월) ~ 4.11.(금) ~ 7. 14.(월)
~		
2차 심사 (최종 심사)	• 공모 2차(최종선정) 심사 진행 * (대상) 신청기업 중 1차 심사 합격 기업 * (내용) 기업별 사업계획내용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, 대면	'25. 4. 21.(월) '25. 7. 28.(월) ~ 4. 25.(금) ~ 8. 1.(금)
V		
공모선정 통보	 누리집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* 보건복지부 : www.mohw.go.kr * 한국노인인력개발원 : www.kordi.or.kr 	~ '25. 5. 2.(금) ~ '25. 8. 8.(금)
	• 선정기업 대표(담당자) 기본 교육 * (내용) 사업이해, 경영관리(회계·노무·법률)	-
이행계약체결 (기업설립)	• 이행계약 체결 	선정 후 30일 이내
대응투자 이행	기업창업(상법상 회사, 협동조합 등) 2차 이행계약 체결	1차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보조금 지원		선정 후 30일 이내
	• 대응투자 이행	-
	• 보조금 신청 및 지원	대응투자 이행 확인 후

Ⅲ. 지원자격

□ 신청자격 ※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
-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·조합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
- ○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- ○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-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※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공모신청 가능
 - ※ 노인 채용기업 설립(창업) 시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 - ※ 개인사업자가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, 이 때 법인은 사업 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

□ 자격요건 ※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
- 공통요건
 - (사업운영기간) 사업운영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기준)
 - (매출액)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(전년도 재무제표 기준)
 - (근로자수)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
- 노인친화기업·기관
 - (노인고용)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,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

- ※ [상시근로자] 전년도 12월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(단, 일용직은 제외). 관련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
- ※ [근로자] 전년도 12월의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. 관련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

□ 신규 노인고용 의무

- 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으로 지정된 해(지정연도)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 하여야 함
 - ※ 신규 노인고용은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) 지정 후 고용한 60세 이상인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(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필수)

□ 대응투자

-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(단체)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(기관)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
 - ※ 최소 30% 이상 투자 시 득점,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 심사 점수 차등 적용(심사기준은 참고4 참조)

< 대응투자 인정 기준 >

-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)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
-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이 부동산(토지, 건물) 등을 무상제공 방식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, 공식 감정가액의 10%를 현금투자로 인정(단,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전액 인정)
 - ※ 현물투자(부동산, 시설장비류, 차량 등)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,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(감정가액 환산적용)
- 대응투자 이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(선 대응투자→후 보조금 지원)

□ 공모참여 제한

-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 조치(최근 6개월 이내 경영 상해고·권고사직 등)를 취한 경우, 공모 참여 제한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사업 폐지 조치를 받은 경우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그 기업 대표, 신청법인 또는 그 법인 대표,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경비, 청소 등 인력 파견 유사 업종인 경우
 - ※ 단,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 기관에서 인력 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경우 신청 가능
 - 부도, 화의 및 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
 - 휴·폐업 중인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사회보험료 미납,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 -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(경영상)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
 - 법인의 대표나 임·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소·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,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
 - 기타 보조사업 신청 자격,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
 - ※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 인한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으며, 사후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중앙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가능
- ※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·기관) 선정 이후 자진포기 한 기업의 경우, 해당기업 및 대표자는 자진 포기일 기준으로 익년도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·기관) 공모에 지원 불가
- ※ 지정기간 동안 인건비 누적지급 총액이 보조금지급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정 종료한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·기관)은 지정기간 종료 이후 3년간 동일 대표자 명의로 노인 채용기업 및 노인친화기업·기관 공모(지원) 신청 불가

Ⅲ. 제출방법

□ 제출서류 ※ 서식 모음(별첨) 참조

	구분	제출서류
	공통 신청인 제	• 공모지원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(서식 참조) * 신청기업 서약서, 사업계획서, 기업(법인)현황,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, 신용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등 * 공모참여 자격요건 확인(상시근로자·근로자 수) 관련 증빙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(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)
신청인 제출		•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(견적서 등) 일체 ※ 관리인력(전문인력)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(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-급여내역서, 소득세 자료 등) 제출 필수 ※ 관리인력 인건비 산정 시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,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 내 책정 가능
물 설 류		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접수일 기준) •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(공고일 이후 발급)
	노인 채용기업 추가제출	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 • 신규 노인 채용기업 창업 투자 관련 증빙 자료 ※ 현금 및 부동산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컨소시엄 시 추가 제출	• 컨소시엄 구성·운영 협약서 사본 1부(해당 시, 공증필수) • 컨소시엄의 경우 노인 채용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 비율(해당 시)
업무담당자 (한국노인인력개발원) 확인사항		사업자등록증명 또는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행정정보 공동이용 (e하나로민원) 활용 		• 사회도함표 원합증정시 1구 •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) 1부

* 신청인 제출 서류 - 공통 중 "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"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

□ 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'25. 2. 14.(금) ~ 6. 30.(월), 18: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※ [1차 접수] 2. 14.(금) ~ 3. 31.(월), [2차 접수] 4. 1.(화) ~ 6. 30(월)
- (제출방법) 방문 및 우편제출 (※ 이메일·택배 제출 불가)
 - ※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(1권으로 합철), USB 제출
 - ※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 접수 불가, 우편제출 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유효
- (제 출 처)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

권역	제출처	연락처	대표전화번호*	담당자
서울·강원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	02-6329-6921 02-6329-6922		
부산·울산 경남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(거제1동 46-4) 주성산빌딩 3층	070-4372-3061 070-4372-3066		
대구·경북	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	070-4736-7093 070-7875-2477	1022 7120	경영
경기·인천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 숭례 19층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	02-6329-6923 02-6329-6924	1833-7128	컨설턴트
광주·전남 전북·제주	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(중흥동 700-5) SRB빌딩 6층	062-714-1293 062-525-5782		
대전·충남 충북·세종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	042-719-1380 042-719-1387		

^{*} 대표전화번호 이용 시 가까운 지역의 경영컨설턴트에게 연결

Ⅳ. 심사절차

□ 심사방법

- 1차 심사
- (심사시기) 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
- (심사방법)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*
 - * (노인 채용기업) 필요 시 현장심사, (노인친화기업·기관) 현장심사 필수
- (심사기준) 1차 평가(100점)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(기관)
- (평가지표) 참고4 참조
- (결과통보) 1차 평가 통과 기업(기관) 개별 통보
- 최종(2차) 심사
- (중앙심의위원회 구성)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, 관련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
- (심사방법) 대면, 기업제출 사업계획 내용 평가

<신청기관 발표평가>

- 2차 심사는 신청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제안발표(PT)후 심사 진행
- 발표 시간은 10분~15분 이내,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(ppt)로 15장 이내
- 제안 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 선정(70점 미만 탈락)
- (평가지표) 참고4 참조
- (선정방법)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※ 2차 평가(100점)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
- (결과통보) 누리집(보건복지부, 한국노인인력개발원) 공고 및 기업 (기관) 개별 통보

∨. 기타사항

- □ 본 공고문의 노인 채용기업은 노인일자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함
 □ 본 공고문의 노인친화기업·기관은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함
 □ 본 공고문의 고령자친화기업(노인 채용기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)이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경우, 지정서의 명칭은 「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서」로 함
 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 □ 선정기관은 "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" 및 "고령자친화기업
- □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(☎1833-7128)로 문의

운영 안내"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

하며,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

- <참고 1> 공모추진 세부 일정
- <참고 2> 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(안)
- <참고 3>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- <참고 4> 심사기준 및 지표 안내
- <참고 5> 노인친화기업·기관 예산편성 기준
- <참고 6> 공모 1차 심사 결과표
- <참고 7> 공모 1차 심사 검토의견서
- <참고 8> 2차 심사(중앙심의위원회) 심사평가표

공모추진 일정

구분

주요 내용

추진 일정

<1분기> 접수 및 선정

- 1분기 공모신청
- 예비 심사
- 1차 심사
- 2차(최종선정) 심사
- 공모선정 통보

′25. 2. 14.(금)	~	3. 31.(월)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'25. 2. 14.(금) ~ 3. 31.(월)

'25. 4. 7.(월) ~ 4.11.(금)

'25. 4. 21.(월) ~ 4.25.(금)

~ '25. 5. 2.(금)

<2분기> 접수 및 선정

- 2분기 공모신청 접수
- 예비 심사
- 1차 심사
- 2차(최종선정) 심사
- 공모선정 통보

- '25. 4. 1.(화) ~ 6. 30.(월)
- '25. 4. 1.(화) ~ 6. 30.(월)
- '25. 7. 7.(월) ~ 7. 14.(월)
- '25. 7. 28.(월) ~ 8. 1.(금)
 - ~ '25. 8. 8.(금)

※ 추진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참고2

노인 친화 환경 개선비용 세부기준(안)

-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^{*}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·설치, 출입로·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
 - * 편의시설이란,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)
- **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**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**제외**(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)
-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**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**(도배장판 등 마감공사) **가능**
-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

구분	내용
신체 부담 경감	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운반 대차 제공 중량물 취급 시 비슷한 높이에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설비 개선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설비 구축
보조기구 사용	○ 근력 부하가 큰 경우에는 카트 등 간이 운반 기구 제공 ○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기구 제공
사고 방지	 작업발판, 안전난간, 추락 방지망,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 설치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 등 보호구 제공 경고표시판 설치 작업장 및 통로에 밝은 조명 설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
기타	∘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∘ PC,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고령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

자주하는 질문과 답변

□ 고용인원 산정 방법

고령자친화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.

- ▶ 근무개월 수 미 충족 퇴사자의 경우, 충원 인력의 근무월수와 합산하여 충족 시 실적 인정함 (예시: 60세 이상 근로자 A 4개월 근무 + 충원된 60세 이상 근로자 B 3개월 근무 ⇒ 고용인원 1명 인정)
- ▶ 노인친화기업·기관 선정 전에 고용되어 있던 60세 이하 직원이 선정 공고일(보건 복지부 발표일) 이후 60세가 되었을 경우,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함
- ▶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
- ① 근로계약 체결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- ② 공모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내 근로자
- ③ 고용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 후 재고용한 경우

□ 보조금 지급 방식

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별 이행계약서에 따라 연차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 목표 인원 달성 전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.

- ▶ (지급대상) 이행계약서 상 당해연도 연차별 보조금 교부 대상기업
- ▶ (지급방식) 3년간 교부
- (지정 연도) 노인 채용기업 창업자금 100%(최대 2억원), 노인친화기업·기관의 고령 친화 근무 환경 조성(개선)비용(최대 1억원)
- (1차 연도)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×300만원
- (2차 연도) 60세 이상 신규고용 목표인원×300만원
- ▶ (지급자격) 신청 대상 기업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- 대응투자금 이행 완료(해당 시)
- 이행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(필수)
- 4대 사회보험료 및 국세 · 지방세 완납 등 납세 의무 이행(필수)

참고4

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

□ 평가 기준

- 중앙심의위원회(선정심사위원회)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 내용, 수행 능력(기업 재무 건전성 평가, 사업화능력 평가), 사업 계획, 사업 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 · 평가
 - (1차 심사)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
 - ※ (노인 채용기업) 필요시 현장심사, (노인친화기업·기관) 현장심사 필수
 - (2차 심사)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

□ 평가 지표

구분	심사영역	세부기준	배점		
1사 심사 수행능력	수행능력	• 기업 건전성(60점) - 부채비율(12.5), 유동비율(12.5), 매출액 증가율(12.5), 매출역 영업이익률(12.5), 기업신용평가등급(10)	100점		
	(영리기업용)	 사업화 능력(40점)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(10), 전문 인력(자격) 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여부(15), 사업화 인프라 보유(15) 			
	수행능력 (비영리기업용)	 사업화 능력(100점)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(25), 운용 인력 전문성(25), 기술성 보유(25), 사업화 인프라 보유(25) 	100점		
	사업내용 (30점)	• 사업 내용 적합성, 노인 업무 적합성,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			
	사업계획 (30점)	│ • 시상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낭성 손익계산과 예산십행의 석성성			
	사업효과	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			
 2차	(25점)				
-		• 대응투자 적합성 : 대응 투자금 / 신청 보조금 * 100%			
심사	대응투자 (15점)	대응투자 비율점수90% 이상15점70%이상 90%미만12점50%이상 70%미만9점30%이상 50%미만6점			
	 가점	• (노인 채용기업) 신설법인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			
	(3점)	• (노인친화기업·기관) 신청기업(기관)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	3점		

□ 선정 기준

- (1차 심사) 배점(100점)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(기관)
- (최종 심사) 배점(100점) 기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 득점 순으로 선정
 - ※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산출

□ 단계별 심사 세부 기준

○ 1차 심사 세부 기준

심사영역		심사항목	배점
		• 부채비율 ※ 평가기준: 전년도(부채총계*100/자본총계)	12.5점
		• 유동비율 ※ 평가기준: 전년도(유동자산*100)/유동부채)	12.5점
	기업	• 매출액 증가율 ※ 평가기준: (당기매출액-전기매출액)*100/전기매출액)	12.5점
	건정성 (60점)	• 매출액 영업이익률 ※ 평가기준: 전년도(영업이익*100)/매출액	12.5점
수행능력평가 ※ 영리기업용		• 기업 신용평가등급 * ^{주1} ※ 평가기준: (10점) A- 이상, (9.8점) BBB+, (9.6점) BBB0, (9.4점) BBB-, (9.2점) BB+, BB0, (9.0점) BB-, (8.8점) B+, B0, B-, (7.0점) CCC+ 이하	10점
		역	10점
	사업화 능력 (40점)		15점
	• 사	• 사업화 인프라 보유 ※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	15점
	합 계		100점
	※ 자체	및 서비스 개발능력 개발·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,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· 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	25점
수행능력평가		 운영인력 전문성 ※ 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, 평균 근속연수 등 기술성 보유 ※ 보유기술 경쟁력, 특수기술 보유, 독창성, 지적재산권 확보 	
※비영리기업용	· —		
	—	화 인프라 보유 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·활용성	25점
	합 계		100점

○ 최종(2차)심사 세부 기준

심사영역	심사항목		배점
	• 사업내용 적합성 ※ 사업의 타당성, 구체성, 사업계획괴	·의 부합성 등	10점
사업내용 (30점)	• 노인업무 적합성 ※ 노동강도, 기술난이도, 대인관계 등	-	10점
	•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※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	.,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	10점
사업계획	•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※ 시장 및 상품·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	준, 계획의 구체성 등	15점
(30점)	•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※ 수익타당성, 수익실현 방법 등		15점
	• 고용창출 효과 ※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,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		10점
사업효과 (25점)	•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※ 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, 파급효과 등		10점
	•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※ 사회문제해결, 고령자 인식개선 및		5점
	• 대응투자 적합성 : 대응 투자금/신	l청 보조금*100%	
대응투자 (15점)	대응투자 비율 90% 이상 70%이상 90%미만 50%이상 70%미만 30%이상 50%미만	점수 15점 12점 9점 6점	<u>15점</u>
가점 (3점)	고령자 창업 여부 (노인 채용기업) 신설법인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* *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 기재 시 가점 인정 (노인친화기업·기관) 신청기업(기관)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		3점
	합 계		100점

- ※ 전문 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
- ※ 가점 받은 기업에서 노인 채용기업 또는 노인친화기업·기관 지정 시점에 대표자가 60세 이상이 아니거나, 지정 후 3년 내에 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 시 계약 해지(대표자를 6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,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). 노인 채용기업은 사업계획서에 해당내용 기재 시 가점 적용

[(*주1)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세부기준]

- ▶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사업 공고 당시(신청서류 접수일 포함) 평가된 내용으로 한다.
- ▶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.
- ▶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별 득점을 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(기관)의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로 평가한다.

참고5

고령자친화기업 예산 편성 기준

□ 노인 채용기업

[노인 채용기업 예산항목]

비목	세목	세세목
인건비 ※ 예산 총액의 30% 이내 편성	인건비	-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(관리)인력 인건비 ※ 보조금 월 200만원,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
	시설 투자비	-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, 기업 창업 목적의 시설투자비와 이에 필요한 수수료, 감정료 등
	자산 취득비	- 60세 이상 노인의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증진, 기업 창업 목적의 자산 취득비용(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,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) ** 차량 취득은 지양하며, 리스 계약으로 임차비로 편성 가능 **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에 추진
사업비	임차비	- 60세 이상 노인 작업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(월세) - 60세 이상 노인 고용유지 및 확대,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(리스) ※ 보증금, 권리금으로는 예산 편성 및 사용 불가
	재료비	-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용 등 ※ 재료비는 예산 총액의 10% 이내로 편성 가능, 재료비 사용 시 검수조서 구비 필수
	교육 훈련비	- 60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비용 ※ 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,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- 자체교육 강사료
	홍보 활동비	- 신문, 방송, 누리집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※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에 한함
	복리후생비	-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비, 백신 등 접종비용
관리	여비(국내)	-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내 출장경비
운영비 ※ 예산 총액의 10% 이내 편성	공공요금	- 전기, 수도, 통신료 등 공공요금
	기타 경비	- 소모성 비품 및 집기 - 사업 추진을 위한 내/외부 회의비 -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

[※] 예산 편성 시 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예산별로 비목별 비중을 준수하여야 함

□ 노인친화기업 · 기관

[노인친화기업·기관 예산항목]

비목	세목	세세목
인건비 ※ 예산 총액의 30% 이내 편성	인건비	-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(관리)인력 인건비 ※ 보조금 월 200만원, 대응투자금 월 300만원 이내로 편성
	시설 투자비	-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 설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의 시설투자비 및 이에 필요한 수수료, 감정료 등
	자산 취득비	- 60세 이상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취득비용(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, 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) ※ 차량 취득은 지양하며, 리스 계약으로 임차비로 편성 가능 ※ 중요재산 취득 관련한 예산계획 및 집행은 지정연도에 추진
사업비	임차비	- 60세 이상 근로자 작업 및 편의증진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(월세) -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및 확대,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(리스) ※ 보증금, 권리금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용 불가
	교육 훈련비	- 60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비용 ※ 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- 자체교육 강사료
	홍보 활동비	- 신문, 방송, 누리집 등을 통한 해당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※ 60세 이상 노인 고용을 위한 광고에 한함
	복리후생비	- 60세 이상 근로자 건강검진비, 백신 등 접종비용
관리	여비(국내)	-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내 출장경비
 운영비 ※ 예산	공공요금	- 전기, 수도, 통신료 등 공공요금 ※ 최소화 하여 운영 권장
총액의 10% [†] 이내 편성	기타 경비	- 소모성 비품 및 집기 - 사업 추진을 위한 내/외부 회의비 -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

[※] 예산 편성 시 보조금과 대응투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예산별로 비목별 비중을 준수하여야 함

참고6 공모 1차 심사표 결과표

2025년 공모 1차 심사 결과표(영리기업용)

소 속				평가대상	
제출일자	년	월	일	담당자	

구 분	평 가 지 표	배점	점수	배점구간					
-101	부채비율 (산식) 전년도(부채총계*100/자본총계)	12.5점		80% 미만 <u>(12.5)</u>	80~100%미 만 (10)	100~130%미 만 (7.5)	130% 이상 <u>(5)</u>		
	유동비율 (산식) 전년도(유동자산*100/유동부채)	<u>12.5점</u>		150% 이상 <u>(12.5)</u>	100~150%미 만 (10)	50~100% 미만 <u>(7.5)</u>	50% 미만 <u>(5)</u>		
기업 건정성 평가	매출액 증가율 (산식)(당기(출액전기(출액*100)전기(출액	<u>12.5점</u>		20% 이상 <u>(12.5)</u>	10~20%미 만 (10)	3~10% 미만 <u>(7.5)</u>	3% 미만 <u>(5)</u>		
(60점)	매출액 영업이익률 (산식) 전년도(영업이익*100/매출액)	<u>12.5점</u>		9% 이상 <u>(12.5)</u>	6~9% 미만 (10)	3~6% 미만 <u>(7.5)</u>	3% 미만 <u>(5)</u>		
	기업신용평가 등급 (산식)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	<u>10점</u>		A- 이상 (10) BBB+ (9.8)	BBB0 BBB- (9.6) (9.4)	$\frac{BB+,}{BB0} \underbrace{\frac{BB-}{(9.0)}}$	B+, B0, B- (8.8) (7.0)		
	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(자체 개발·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, 사업화 관련 전담부서·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)	10점		우수 (10)	보통 (8)	미흡 (6)	아주 미흡 (4)		
사업화 능력 평가 (40점)	전문인력(자격) 확보 및 관련 기술 보유 (자격증 소지 및 경력(1년기준) 여부, 보유기술 경쟁력, 특수기술 보유, 독창성, 지적재산권 확보 등)	15점		우수 (15)	보통 (12)	미흡 (9)	아주 미흡 (6)		
	사업화 인프라 보유 (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·활용성)	15점		우수 (15)	보통 (12)	미흡 (9)	아주 미흡 (6)		
	합 계 (100점 만점)				() 점			

2025년 공모 1차 심사 결과표(비영리기업용)

소 속				평가대상	
제출일자	년	월	일	담당자	

7 8			점수	배점구간					
구 분	평 가 지 표	배점	ВΤ	25점	20점	15점	10점	5점	
	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 (자체 개발·생산설비 및 활용 가능 외부 설비 보유, 사업화관련 전담 부서·전담 인력 보유 및 배정 여부)	25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아주 미흡	
사업화	운영인력 전문성 (운영 인력의 해당 분야 국가 및 관련 단체 자격증 보유, 평균 근속연수 등)	25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아 미흡	
능력평가	기술성 보유 (보유 기술 경쟁력, 특수기술 보유, 독창성, 지적 재산권 확보 등)	25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아주 미흡	
	사업화 인프라 보유 (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관 및 인프라 구축·활용성)	25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아주 미흡	
	합 계 (100점 만점)) 점		

참고7 1차 심사 검토 의견서

1차 심사 검토의견서

가. 신청 개요

접	수 번 호				2	2025- <i>×</i> 7	를 -0t	91				
	신 청 유 형		□ 노인	채용기업				□ 노인친화기업·기관				관
	법 인 명							법	인 대 표	1		
	신청기업 (기관)명							기:	관대표자			
신청 기업 (기관)	대응투자 기업(기관)명						7	기업	(기관)대	莊		
	전 화								FAX			
	E - mail	,	가급적 기업 메일주소 작성					설	립 일 지	-		
	주 소	(↑: -					-)				
	홈페이지											
	사업요약	10글자 이내로 사업내용 요약 작성, 신청기업(기관) 제출자료 참조				업 종						
		총사업액	Ē	•				원	(₩)
		보조금 신청금액	Ē	1				원	(₩)
		대 응투자 (천원)	구 분			11	25년		'26 է	<u> </u>		'27년
			소 계									
			현 금									
사업	예산 및		현 물									
개요	참여인원	간접투자	기 타									
	(천원, 명)	보조금						성(보	.조금)			관리
		세부내역	인건비	시설 투자비		자? 취득		Ç	김차비	기		운영비
		(천원)										
			○ 지정	연도 이	후 관	·리기 [》]	간(5년	<u>!</u>) 니	H 고용 청)출 성	성과	목표
		고용인원		분	202	26년	2027	'년	2028년	202	9년	2030년
				이상 출 목표								

나. 기업 및 단체 현황

구분	세부 내역	검토 내 용(예시)
	신청 기관(기업) 법인 유무	
	대응투자 규모의 적정성	■ 신청유형: ■ 대응투자금액: (보조금 대비 %)
	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 해당 여부	
	신청법인의 결격사유 여부	
	최소 고용인원 목표, 보조금 신청 금액 적정성	■업종: ■고용목표: 으로 최소 고용인원 목표 준수 ■보조금 신청금액:
	신청서 및 부속서류,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	
기업 및	법인정관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	
단체 현황	컨소시엄 구성·운영 협약서(해당 시)	
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
	4대보험 완납증명서	
	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	
	법인 재무제표(기업의 경우)	
	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(컨소시엄의 경우)	
	관리인력 인건비 증빙자료(해당 시)	
	(노인 채용기업) 사업장 설립형태 증빙	
	성명,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 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	

다. 평가 참고 의견

구분	평 가 지 표	검토 내 용(예시)				
	사업내용 적합성 (사업의 타당성, 구체성,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)	■ 00기술, 00특허, 판매채널, 00파트너십, 00 제휴, 자체 브랜드 등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업 내외부의 핵심 자원이 존재 ■ A사의 대응투자로 안정적인 설비확보 및 판매채널 확보가 기능해 보이며 원재료의 구 매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, 통제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(약 1주 안에 상품화 및 배송)효율적 기업활동 및 제시한 비즈니스모 델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				
사업 내용	노인업무 적합성 (노동강도, 기술난이도, 대인관계 등)	■ 의류, 스키장비 등 단순물품을 보관(입출고 업무) 및 관리하는(오염,구김방지)업무로 업무 난 이도가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직무교육 또한 자체 시스템을(D사연계)통해 운영 예정				
	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(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, 구체 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는지,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)	■ 기존 업계와 달리 디자인, 생산과정, 유통 과정을 기업내부로 수직 통합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또한 자체 물류시스템을 갖추어 생산과 납품 지연, 품질불량과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■ 자체브랜드를 통한 직영매장 판매로 수익을 창출.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획단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빠른 의사결정과 시간단축을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임				
사업	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(시장 및 상품·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, 계획 의 구체성 등)	■ 대부분의 00업체가 공구를 구매하는 목적은 장비의 소유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착안, 00분야를 주요시장으로 범용화된 공구를 "장기임대 및 유지보수" 하는비즈니스모델을 제시 ■ A협회, B기업,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경로를통한 시장조사 과정을 거쳐 결과의 신뢰도 높음				
계획	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(수익 타당성, 수익 실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원가의 구조와 마진폭,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재고, 납기, 자산 회전 등의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)	■ 00현장에 공구 대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(연간 00억 추정), 또한 임대 장비에 대한 관리 서비스 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(연간 00억 추정) 수익구조로 관련 매출과 예상 손익 계산이 타당해 보임 - 상품 제고관리는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으로 (00업체가 온라인으로 임대장비를 확인)이루어				

구분	평 가 지 표	검토 내 용 (예시)
		지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다시 공구 관리서 비스 및 장비구매 등 예산집행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어짐 ■ 매출예상치가 현실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손익계산의 추정치가 비현실적
	고용창출 효과 (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,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)	■ '셀프 스토리지 서비스(의류, 스키장비 등 보관관리)'를 제공하는 B사의 사업모델은 회원 들의 물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파트에서 다수 의 고용 창출(월평균 00명)이 이루어지며 - 사업 확장 단계에서 회원을 상대로 픽업 서 비스를(회수 및 배달)제공, 추가적인 고용창출 (월평균 00명)과 부가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취 하고 있어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설득력이 있음
사업 효과	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(폭 넓은 전후방 연관 사업, 파급 효과 등)	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00제품을 몇가지 제도 나 혜택을(재구매)통해 고객들이 스스로 제품 유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전략을 통해 주력사업과 부가 사업 모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임
	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(사회문제 해결, 고령자 인식 개선 및 커뮤니 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)	■ 지역사회 빈민제층에 000를 제공하고 회수 된 구형000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C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함께 사 회적 책임을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보임
대응 투자	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(예산신청액 대비 분담률, 자금유입 경로 등)	■ 대응투자 내역 기술 - 현금 대응투자 : - 현물 대응투자 :
신 용 정보	신청기업(기관) 신용정보 평가 가. 채무불이행 이력 나. 소송정보 (소송계류 상태) 다. 법정관리/화의 이력 라. 당좌거래정지 이력 ※ 해당내역이 있을 경우 상세 기술	

라. 최종 검토의견

1. 서류 확인사항 ○ 2. 현장실사 확인사항 ○ ※ 서류 및 현장실사 필수 확인 □ 제출 서류의 서식 및 요건 충족의 □ 총괄담당자 및 기관장(대표이사)면 □ 시장조사 진행여부 및 관련내용(□ 컨소시엄 또는 대응투자 참여기를	여부 /기관의 신청자격 '담 /사업관련 제안된 - '거래선, 수익실현 방법	부지, 시설 등의 등) 확인		필요시)
		년	월	일
	소속 :	성명 :		(인)

소속: 성명: (인)

참고8

2차 심사(최종, 선정위원회) 심사평가표

최종심사 평가표

소 속			평가대상	
평가일자	년 월	일	평가위원	(서명)

¬ н	명 및 및 등	ᄪ			배점구간		
구 분	평 가 지 표	배점	Α	В	С	D	점수
사업	사업내용 적합성 (사업의 타당성, 구체성, 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등)	10점	10	8	6	4	
내용 (30점)	노인업무 적합성 (노동강도, 기술난이도, 대인관계 등)	10점	10	8	6	4	
(308)	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(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,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)	10점	10	8	6	4	
사업 계획	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(시장 및 상품·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, 계획의 구체성 등)		15	12	9	6	
기록 (30점)	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(수익타당성, 수익실현 방법 등)	<u>15점</u>	<u>15</u>	<u>12</u>	<u>9</u>	<u>6</u>	
	고용창출 효과 (신규고용창출 가능성,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)	10점	10	8	6	4	
사업 효과 (25점)	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 (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, 파급 효과 등)	10점	10	8	6	4	
	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(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)		5	4	3	2	
대응 투자 <u>(15점)</u>	대응투자 적합성	<u>15점</u>	<u>15</u>	<u>12</u>	9	<u>6</u>	
<u>가점</u> (3점)	<u>고령자 창업 여부</u>	<u>3점</u>	해당	시 3점,	미해당 시	<u> </u>	
	합 계			() 점	